



제274회 임시회
2008.9.19(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9월 9일

○ 회부일자 : 2008년 9월 12일

□ 제안 이유

○ 농촌 산간 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개인 관리 지하수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하여 음용수 안전성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 효율있는 기업 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 종별 처리 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검사 시험 처리 기간 단축 (안 제2조 별표 1)

○ 수처리제 : 14일 → 12일

○ 대가소음진동검사 등 : 23일 → 17일

나.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 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

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 단 영업용과 허가용은 제외 (안 제5조)

□ 검토 의견

1. 조례안 제정 동기

- 지난 2004년 10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달한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동 조례안 개정사유

- 첫째, 별표의 시험 종별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의약품 검사 처리기간 등 15건의 항목에 대해 검사처리 하는데 그 중 수 처리제²⁾ 항목 등 2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운영 함.
 - 수 처리제 처리기간 : 14일 → 12일(2일 단축)
 - 대기.소음.진동검사 등 : 23일 → 17일(6일 단축)
- 둘째, 도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양수 능력이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은 농촌 벽지지역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 대책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의 권고사항('07.10.17)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1) 제8조 (수수료 등)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 1 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정수장의 정수처리 약품 :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 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재

(예, 응집제, 살균소독제, 방청제, 활성탄 등)

3. 검토결과

○ 동 개정 조례안은

-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효율성 있는 기업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험 종별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것이며,
- 농촌 산간지역의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